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한우자조금선거관리위원장

(경유)

제목 제6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출 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

한우자기252-61호(2025.2.17.)로 우리 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.

○ 질의 내용

- 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, ②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, ③ 한우자조금 위탁사업자인 축산단체 임원이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임원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인지

○ 검토 결과

- 이해충돌방지법의 해석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이고, 한우자조금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동일한 질의를 한 바,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주무관

정광호

사무관

김정수

축산경영과장

전결 2025. 2. 26.

이연섭

협조자

시행 축산경영과-1188

(2025. 2. 26.)

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(어진동)

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333

팩스번호 044-868-0127

/ abuzegi@korea.kr

/ 대한민국 공개

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